

#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26.

발의의원 : 김정옥, 김대현,  
김태우, 박종필,  
박창석, 손한국,  
이동욱, 이영애,  
이재숙, 이태손,  
전경원, 조경구,  
황순자 의원  
(13명)

## 1. 제안(개정) 이유

-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‘묻지마 범죄’가 잇따라 발생하였고, 이와 유사한 ‘흉악범죄 예고글’로 검거된 게시자가 200명이 넘어서는 등 ‘묻지마 범죄’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음.
- ‘묻지마 범죄’ 사건 피의자는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여 범죄를 계획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시간에 밀집도가 높은 도시철도 역사는 ‘묻지마 범죄’의 대표적 위험지역임.
-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평소 역무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구비·비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흥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도록 함. (안 제5조제4항)
- 나.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. (안 제5조제5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, 「교통안전법」 등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 협의 필요
- 라.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 ~ ③ (생 략) 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 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 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 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 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□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20. 6. 9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## □ 도시철도법

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연구
2.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
3.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제조치
4.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

## 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·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

###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제5조 제4항) 신설에 따른 역무시설내 안전장비 구비·비치에 따른 비용 발생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)

- 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
-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(제5조제4항) 안전장비를 구비·비치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비용(추정액 54,600천원)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- 안전장비 구비금액은 도시철도 1·2호선(61개 역사) 36백만원, 도시철도 3호선(30개 역사) 18백만원, 합계 5천4백6십만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다 음 -

(단위 : 개소, 개, 원)

구분	바디캠 (단가)	호신용 스프레이 (단가)	U자형 막대 (단가)	경보기 (단가)	수량 합계	가격 합계
1·2 호선	61개소×2set (220,000)	61개소×2set (40,000)	61개소×2set (30,000)	61개소×2set (10,000)	488	36,600,000
3호선	30개소×1set (220,000)	30개소×1set (40,000)	30개소×1set (30,000)	30개소×1set (10,000)	120	18,000,000
합계						54,600,000

자료 : 1set(바디캠, 호신용스프레이, U자형 막대, 경보기), 30만원

#### 4. 작성자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정책분석담당관실 주무관 박종기(053-803-5069)